

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

(배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2.

발 의 자 : 성원환·김명국·이달호·

김선욱·배효임·배철현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' 21.10.08. 공포)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무전결 처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(안 제1조)
- 나. 결재권의 배분 (안 제3조)
- 다. 전결사항 (안 제4조)
- 라.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0조

고령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고령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,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전결권자) 제2조에 따라 전결권자는 의사과장, 전문위원, 계장으로 한다

제4조(전결사항) 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.

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.

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·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.

제5조(중요사항의 보고)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

2. 각종 민원(진정, 청원, 탄원 등) 및 고령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
3. 그 밖의 주민의 권리·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

제6조(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) 결재권자가 결원, 휴가,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.

제7조(전결사항의 효력)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